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753 |
|------|-----|

2009. 02. 1
재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월 30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월 30일

다. 상정일자 : 서울특별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(2009년 2월 16일) 상정, 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경제력강화본부장 최항도)

- 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른 소관 업무 변동사항과 관련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 령)

가. 기금관리 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원 변경(안 제7조, 제9조)

- 이 사항은 2008년에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원이 변경됨에 따라,
- 기존에 기금운용관이던 “산업국장”을 “경제진흥관”으로, 분임기금운용관이던 “생활경제과장”을 “기업지원담당관”으로 변경하고,
-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“산업국장”에서 “경제진흥관”으로, 위원 가운데 “산업지원과장” 및 “생활경제과장”을 각각 “기업지원담당관”과 “생활경제담당관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는 행정기구의 변경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나. 기금 우선 용자대상 범위의 확대(안 제11조)

- 안 제11조제2항제2호는 기금의 우선 용자 대상자의 범위를 “특정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구별 권장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”까지 확대하는 것임.
- 이는 지난 2005년 개정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개발진흥지구의 종류에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).
- 이상과 같이 관련 조례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산업개발진흥지구 외에 특정개발진흥지구까지 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임.

다. 조문의 정비

- 법제처가 정한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례를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자치법규 수요자들의 법령 해석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.

1) “특정개발진흥지구”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기능, 공업기능, 유통·물류기능 및 관광·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6. 심사결과 : 「원안 가결」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)
7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.....